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
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
신고인	상호	사업자 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
이전하려는 국외 사업장 (국외 본사가 있는 경우 그 본사)	상호	사업자 식별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
이전 사유	[] 국내사업장 단순 폐업 [] 국외 본사에 합병 [] 기타	
이전 예정일		

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34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국외 이전일 30일 전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2. 해외 이주 관련 신고 서류 등 사업장 국외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담당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)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⇒	접 수	⇒	검 토	⇒	결과 통보
신고인		한국환경산업기술원		한국환경산업기술원		한국환경산업기술원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